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월간 뉴스레터

2017년 11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일반기업회계기준
2017 연차개선

세무정보

- 2017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근로·자녀장려금 11월 30일
까지 기한후신청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일반기업회계기준 2017 연차개선
일반기업회계기준
2017 연차개선
개요

일반기업회계기준 2017 연차개선은 기준 내에서의 문단 간 상충 해소, 규정의 미비점과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효율적으로 고려한 회계기준의 개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연차개선과 정규개정으로 구분됩니다. 연차개선은 기준서 문단 간 상충 내용 및 기준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규개정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 제·개정을 의미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017 연차개선은 2017년 하반기 기준위 의결 및 금융위 보고 후 발표예정(시행일: 2018년 1월 1일)이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정 내용은 회계기준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준 별 주요
연차개선 내용
-금융자산 및 금융
부채
1. 「제6장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1)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변경 시 회계처리 명확화
1) 개정 사유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변경된다면, 유효이자율법의 정의, 상각후원가 측정, 문단 실6.19를 유추 적용하여, 변경된 추정 현금흐름에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조정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거나 재협상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현금흐름을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 후 원가를 재계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각 기준 별 주요
연차개선 내용
-유형자산

2. 「제10장 유형자산」

(1) 유형자산 제거 시점 규정을 K-IFRS와 일관되게 수정

1) 개정 사유

현행 유형자산의 제거 시점 규정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문단을 K-IFRS와 일관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을 폐기하지 않았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자산의 정의를 더는 충족하지 않는 시점)에 제거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 개정 내용

K-IFRS 1016 문단 67과 일관되게 유형자산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자산을 제거하도록 문단 10.44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유형자산 제거 손익 규정을 K-IFRS와 일관되게 수정

1) 개정 사유

현행 유형자산의 제거 시점 규정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문단을 K-IFRS와 일관되게 개정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제거손익을 산정할 때 처분가액이 순 매각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 개정 내용

K-IFRS 1016 문단 71과 같이 (순 매각금액-장부금액)으로 제거 손익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문단 10.45를 수정하였습니다.

각 기준 별 주요
연차개선 내용
-무형자산

3. 「제11장 무형자산」

(1) 무형자산 제거 시점 규정을 K-IFRS와 일관되게 수정

1) 개정 사유

현행 무형자산의 제거 시점 규정에 적용할 구체적 지침이 없으므로 관련 지침을 K-IFRS와 일관되게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K-IFRS 1038 문단 114와 일관되게 무형자산 제거 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수익기준서를 적용하도록 문단 11.38을 수정하였습니다.

(2) 무형자산 제거 손익 규정을 K-IFRS와 일관되게 수정

1) 개정 사유

무형자산 제거 손익을 산정하는 데 적용할 지침이 없으므로 K-IFRS와 일관되게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K-IFRS 1038 문단 113과 같이 제거 손익은 (순 매각금액-장부금액)으로 산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문단 11.38의2를 추가하였습니다.

각 기준 별 주요
연차개선 내용
-사업결합,
동일지배거래

4. 「제12장 사업결합, 제32장 동일지배거래」

(1) 실질적 동일지배거래 범위 명확화

1) 개정 사유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있음에도 외감법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었던 경우, 후속적으로 실질적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이 발생할 때 취득법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 종속기업에 대해 공정가치로 재측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실질에 위배됩니다.

2) 개정 내용

경제적 실질상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2장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32장 동일지배의 범위를 수정하고,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다루고 있는 제12장의 관련 문장을 삭제하였습니다.

각 기준 별 주요
연차개선 내용
-수익

5. 「제16장 수익」

(1)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 관련 규정 추가

1) 개정 사유

K-IFRS 제1115호와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실무에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익 규정에도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을 설명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K-IFRS 제1115호 B26에서는 고객이 한 제품을 유형, 품질, 조건, 가격이 같은 다른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K-IFRS 제1115호 B26을 일부 수정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3에 추가하였습니다.

(2) 반품가능판매 회계처리를 순액에서 총액으로 변경

1) 개정 사유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총액으로 보여주는 정보가 더 목적 적합하고 총액 회계처리가 어렵지도 않다는 점, 순액 회계처리는 다른 기준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 K-IFRS 제1115호와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반품가능판매의 부채의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16장 실16.18에서는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이 해당하는 금액을 총당부채로 설정하도록 하나, K-IFRS 제1115호 B21, B24, B25에서는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K-IFRS 제1115호 21, B24, B25와 같이 반품 관련 총당부채를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18을 수정하였습니다.

각 기준 별 주요 연차개선 내용 -환율변동효과

6. 「제23장 환율변동효과」

(1) 간주가능통화에서 실제기능통화로의 변경

1) 개정 사유

간주가능통화를 적용하던 기업이 실제의 기능통화로 변경이 가능한지, 이 경우 새로운 기능통화에 적용되는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3.2에 따르면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하며 다만, 해당 국가의 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23.13에 따르면 실제거래, 사건 및 상황에 변화가 있어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적용되는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합니다.

2) 개정 내용

간주기능통화를 적용하였다가 진정한 의미의 기능통화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때에는 제5장의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1) 개정 사유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인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할 때, 그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개정 내용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인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가 있고 이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할 때, 그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기준 별 주요

연차개선 내용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7.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1) (감가)상각 특례대상 법령의 범위를 확대

1) 개정 사유

법인세법 외의 다른 법령(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으나, 특례에서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산정할 때 법인세법에 따르는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법인세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도 (감가)상각 특례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각 기준 별 주요

연차개선 내용

- 집합투자기구

8.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1)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일부 용어 및 지분증권 명세서 양식 변경

1) 개정 사유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중 기준서 미 반영 부분 존재, 관련 법률 및 실무와 기준서 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실무상 혼란 존재합니다.

2) 개정 내용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변경 등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다음과 같이 용어와 지분증권 명세서를 수정하였습니다.

- ‘수수료(비용)’ 및 ‘중도해지수수료’ => ‘보수’ 및 ‘환매수수료’

- 지분증권 명세서에 ‘코넥스 시장 상장’분류를 추가

세무자문 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2017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2017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구분		과세대상 금액
주택		인별 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토지	종합토지	인별 5억원 초과
	별도토지	인별 80억원 초과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한도 내 전액 납부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 5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7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8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 만 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60 개월 한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

주
요
내
용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1)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2016.12.31.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98.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 40세 이상('76.12.31. 이전 출생)인 경우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

(2)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구 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3) 재산 요건

- 2016.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4천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 단,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됨.

○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나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음.

* 정기 신청 기간(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 국세청에서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안내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

○ 휴대폰 안내 문자(7.7., 11.1.), 안내문(8.10.) 발송 등

□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접근경로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장려금 미리보기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대법 2012 두 28414, 2017. 7. 11.)

■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되는 차입금 이자의 의미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할 때에 차입금 이자를 일부 차감하도록 한 것은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 중에서 과세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이미 손금불산입된 이자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음.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되는 차입금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손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대법 2015 두 49115, 2017. 7. 11.).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